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7호 2009. 2. 4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1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09-12호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고시.....2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49호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공고..... 3
- 정선군공고 제2009-57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타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4
- 정선군공고 제2009-65호 2009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9
- 정선군공고 제2009-66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0
- 정선군공고 제2009-67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납부 독촉장 공시송달14
- 정선군공고 제2009-69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5
- 정선군공고 제2009-71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09-11호

하천 점·사용 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1. 28.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신동읍장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59번지
하 천 명		골지천(지방 2급)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2번지일원		
	허가량	A = 357 m ²	폐천부 지 예상면 적	□□없음□□
	기 간	2009년 01월 28일 ~ 2014년 01월 30일		
	목 적 및 사 유	예미4리(밝은밭) 농로포장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기타: 하천 점·사용 허가번호 제2009 - 2호				

정선군고시 제2009-12호

강원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별표1제6호』 의거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2. 02.

정 선 군 수

- 2009년도 하천점용료· 골재사용료 -

○ 하천골재 사용료

(단위 : 원/m³)

구 분	모 래	자 갈	막자갈	자연석	비 고
골재사용료 (원석대)	1,672	1,472	1,332	10,720	'08년 단가로동결(도내 일률 적용)

정선군공고 제2009-49호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
정 선 군 수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기우천	2009소하천 (기우천)정비	북실리 556번지	북실리 552번지		252		09.02	09.07	손실 보상	
고성천	2009소하천 (고성천)정비	고성리 891번지	고성리 815-4번지	576	576		09.02	09.07	수해피해로 부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생활을 위하여	
단임천	2009소하천 (단임천)정비	숙암리 300번지	숙암리 295번지		556		09.02	09.07		“
신치천	2009소하천 (신치천)정비	신월리 392번지	신월리 394-1번지		150	교량 1개소	09.02	09.07		“
호직천	소하천(호직천) 정비사업	직전리 300번지	직전리 산197번지		158	교량 1개소	09.02	09.05	손실 보상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재난안전관리과 비치)
3. 위치도(재난안전관리과 비치)

정선군공고 제2009-57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1. 20.

정 선 군 수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시설중 생약가공공장 및 생약공판장은 산업경제과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전시판매장은 (사)정선군새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한 약초시장은 본 조례의 입 주자 자격제한으로 약초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활성화시키고자하며, 상기 시설들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정책과 (56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정선군 농업정책과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202(우233-808)
- 팩스 : 033-560-2599

- 붙 임 : 1.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 (안) 1부.
 2. 현행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

제정(1991. 02. 15 조례 제1466호)

개정(1992. 12. 30 조례 제1533호)

개정(1994. 07. 22 조례 제1591호)

개정(1997. 07. 19 조례 제17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 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생약종합유통센터(이하 "생약유통센터"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19>

제2조(위치) 생약유통센터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1·592-3·592-4·592-8·592-9번지에 둔다. <개정 1994.07.22, 1997.07.19>

제2조의2(시설) 생약유통센터에는 다음의 시설을 둔다. <신설 1997.07.19>

- 1. 생약공판장
- 2. 전시판매장
- 3. 약초시장
- 4. 생약가공공장

제3조(관리운영) 생약유통센터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며 운영은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다. <개정 1997.07.19>

제4조(공판장의 기능) 생약유통센터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행한다. <개정 1994. 07.22, 1997.07.19>

- 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
- 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 3. 대농민 상담 및 유통정보 전파
- 4.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생약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선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07.19>

제6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생약유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07.19>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의 요율) ①생약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매년 산정한 금액을 지정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 ②생약유통센터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공과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4.07.22, 1997.07.1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07.19>

제8조 <삭제 1997.07.19>

제9조(사용허가기간) 생약유통센터 시설물별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유상사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제9조의2(사용허가의 취소 및 퇴거) ①생약유통센터 시설물의 사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권을 상실하였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거일은 사용허가 취소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1997.07.19>

1.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사용료 및 공공요금, 기타 유지관리비등을 2월이상 체납한 때 <개정 1997. 07.19>
3.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1997.07.19>
4.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생약유통센터 시설물 사용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1997.07.19>

②생약유통센터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제10조(사용자의 설비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관리권자가 판단하여

계속 사용가치가 있는것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생약유통센터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19>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군공유 재산관리조례, 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65호

2009년도 정선군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2009년도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02. 02.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 관내 도시지역외(녹지지역 제외) 지역에 건축하는 다음의 단독주택 중
 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용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라. 주민이 자력으로 신축하는 주거전용면적 150㎡ 미만의 주택
2. 지원금액 : 동당 5,000천원 범위내 보조
3. 지원신청
 가. 신청시기 : 1차 - 2009. 06. 30일 까지 / 2차 - 2009. 10. 30일 까지
 나.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신청기관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6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1. 28.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노력,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 등
 -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장비·인력 사용을 권장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정방침인 「역동과 활기찬 지역개발」 및 강원도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구현에 앞장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 모범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건설관리담당 (우편번호 233-804)
 - F A 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56

붙임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범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련 실·과·소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체 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67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정선군폐기물관리
에 관한조례에 의거 납부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 01. 29.

정 선 군 수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 29. ~ 2009. 2.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부과사유	부과일자	금 액	공시송달
남영모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7번지 132호 24/5 진흥빌라 B02호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8.11.05	105,000	폐문부재
강은정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70번지 18호 2/1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8.11.05	105,000	수취인불명
임덕수	강원도 동해시 쇠운동 8번지 33/3 부영아파트 104동 802호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8.11.05	105,000	폐문부재
(주)카월드 모터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7번지 96호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8.11.05	105,000	이사감
이태영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1리 592번지 1/3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8.11.05	105,000	폐문부재

4. 공시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 정선군 환경산림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2009. 2. 12.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간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9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01. 30.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 본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등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및 운영방법(안 제6조, 제7조, 제9조)
-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용 및 양심자전거 운용(안 제10조, 제11조)
-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 및 관리 운영 위탁(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2월 1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우편번호 233-701)
 - F A 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90

붙임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전거이용시설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 2. 자전거이용 여건 변화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3.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도로의 개발
- 4. 읍·면별 연계성을 검토한 이용개선방안 개발
-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71호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02. .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공포·시행(2007.4.5) 됨에 따라,
-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및 결정 (안 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가 개정됨에 따라
 - 회계관직 및 책임범위에 따른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자 함.
- 나. 상위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안 제1조, 제7조)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이 전면개정 공포(2005.8.4)되면서 일부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조문을 상위법의 조항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전화 560-2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정선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4조 중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을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① 지방재정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지방재정법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